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주·야간보호급여
치매가족휴가제 중 종일 방문요양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치매가족휴가제 중 단기보호급여,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등급~5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3~5등급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6쪽 참조)
- 치매가족휴가제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가족휴가제란?'을 참고하세요. (30쪽 참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운영자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운영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본인부담금
$\text{건강보험료} \times \frac{\text{장기요양보험료율}(0.9082\%)}{\text{건강보험료율}(7.09\%)}$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비용 등	(재가급여) 이용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 이용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 ※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확인하세요.」(11쪽 참조)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생활하며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 ※ 입소정원 : 10명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 입소정원 : 5명 이상~9명 이하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벽지지역 거주⁶⁾,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입니다.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정도의 돌봄 서비스를 받은 때에 지급합니다.)
- 가족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⁷⁾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요양비 수급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신청 없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 해당 급여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6)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알림·자료실 → 자료실 → 법령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알림·자료실 → 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연락주시면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